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73호)

■ 최혁진·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6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7
1. 총괄적 검토	7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7
나.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	9
다. 정부 의견	15
2. 조문별 검토의견	16
가. 제명 및 총칙	16
나.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21
다.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	24
라. 기본사회위원회 등	30
마. 보칙	39
바. 부칙	41

I. 제안경위

【신정훈의원안】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6.
3. 회부연월일 : 2026. 1. 7.

【최혁진·김우영의원안】

1. 제 안 자 : 최혁진·김우영의원 등 25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23.
3. 회부연월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정훈의원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진체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본사회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국민 참여·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 단위로 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조정·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위촉위원은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3) 기본사회위원회는 심의·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최혁진 · 김우영 의원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

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들은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신정훈의원안은 제명을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으로 하여 본칙 5장 총 27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제명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으로 하여 본칙 4장 총 16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됨.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목적	목적
기본이념	기본이념
정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생활권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돌봄을 받을 권리 등 보장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국민 참여와의 연계	주거와 의료의 보편 보장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사회연대경제의 촉진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모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제3장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	제3장 기본사회위원회 등
기본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기본사회위원회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시·도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	기본사회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시·도별 기본사회 종합계획
제4장 기본사회위원회 등	
기본사회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시·도 기본사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사무기구	
이행상황의 점검 등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기본사회 정책 평가 및 공개
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 및 협력
교육 및 홍보 등	
부칙	부칙
시행일	시행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법 시행을 위한 준비

나.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기본사회란 학문적·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¹⁾

이는 소득이나 자산, 노동시장 참여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²⁾의 개념을 공공서비스 영역 전반으로 확장하여,

모든 국민에게 각종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서비스(basic service)’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데, 2025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촉진된 측면이 있음.

이후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 보장,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교통 패스 확대, 통신비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제시되었고,

1) 윤형중, 「기본사회: 국민 행복을 위한 든든한 토대」,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 증진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2025.07.15.

제22대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2025.02.10.)

2) 최병호·박인화, 「기본소득제 도입의 타당성 고찰」, 한국재정학회, 2020.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였고, 2026년 1월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관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이번 2월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대중교통 정액권 개념의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대중교통요금으로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음.³⁾

이 외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하거나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3) 환급 기준액은 연령(청년, 일반, 어르신), 소득(저소득 여부), 자녀수(2자녀/3자녀), 지역(수도권/일반/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 적용 교통수단(광역교통수단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한데, 최소 3만원(저소득 및 3자녀/특별지원 지역/광역교통수단 미포함)부터 최대 10만원(35세 이상 65세 미만/수도권/광역교통수단 포함)까지 다양함.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21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반영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본사회’는 제21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키워드로서 활용되고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각종 계획 수립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기본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를 마련하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계획 수립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을 위하여 이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사항이기보다는 **행정부 내부**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기본사회 관련 정책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등에서 그 개념이나 적용 가능 영역, 도입의 필요성 등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음.⁵⁾

5) 한편 국회에서 “기본사회”에 관한 언급은 제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제21대 국회에서는 2022년·2023년 정기국회 당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음.

반면, 민주주의 측면에서 집행기관인 행정부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률 제정시 대통령 교체 등 행정부의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촉발시켜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관련 정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의의가 있겠음.

둘째,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본적 생애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개념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제도와 차이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⁶⁾

6)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제정안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기본적 생애소득’은 공공부조의 대상을 국민 일반으로 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득 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반면, 사회보장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최저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보는 경우,

기본사회는 생활 유지 능력이나 경제적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의 생활 수준 이상으로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다. 정부 의견

제정안들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와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하여 ①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정수(해양수산부), ② 기본사회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모두의 위원회 설치(행정안전부),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용 조문(국토교통부) 등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넘어 상생과 연대의 공동체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인공지능·혁신기술이 조화롭게 국민 모두의 행복과 상생·연대 기반의 기본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기본사회는 정의·민주주의·역량·지속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자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육·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생활권”이란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의 권리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말하며,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참여를 확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등록된 조직	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모두의 인공지능(AI for All)”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술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모두의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사회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③ 국가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시민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체 기반의 경제와 정책 생태계를 구축한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본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생활권 보장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정훈의원안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명으로,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으로 하여

제1장 ‘총칙’에서는 입법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함.

한편,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정의규정에 ‘모두의 인공지능’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환경 하에서 기술 접근성 차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발생되고 디지털 격차의 심화는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⁷⁾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들은 제명에서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들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정책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 보다 상위의 법체계에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는 ‘기본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⁸⁾

반면, 기본사회 정책을 사회보장정책이 발전된 형태로서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 기본사회 관련 각종 정책에 있어 기본 이념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기본법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기본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7) 김나정·권성훈,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이슈와 논점, 제2389호, 국회 입법조사처, 2025.07.22.

8) 최근 입법례에서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제명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 이념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다른 법률의 모범이나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명에 ‘기본법’을 포함할지 신중할 필요가 있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2024.

제정안에 따른 ‘기본생활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법률에서 ‘생활권’은 행정 구역과 관계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생활권역(生活圈域)’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법 해석상 혼란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외에도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2025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정의와 조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 법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서 생활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에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제7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창출하는 수익을 이에 기여한 국민들과 공유하거나 지역에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생활권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생활권을 가진다. ② 국가는 생애주기 별로 국민에게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참여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③ 국가는 빈곤, 고립, 정보격차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에 힘써야 한다.	제7조(돌봄을 받을 권리 등 보장) ① 국가는 돌봄을 공공서비스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AI 학습 환경을 보편화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한 교육·돌봄 혁신 모델을 확대한다.
제9조(국민 참여와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와 의료의 보편 보장) ① 국가는 국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주택의 질적 기준을 민간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② 국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의 공공 제공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제10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연대경제의 촉진)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를 모두의 기본사회의 주요 축으로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과 고용,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② 국가는 공공조달·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재투자를 촉진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제11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모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① 국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등 모든 영역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②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안전 기준을 확립한다. ③ 국가는 “모두의 AI”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AI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보장한다.

제정안들은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에서 기본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제정안의 주요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음.

다만, 제정안별로 기본사회의 정책 내용과 과정,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법 제정시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례와 집행과정, 집행수단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신정훈의원안은 기본사회에서 ‘기본적 생애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사회 정책의 내용과 정책과정, 수단을 규정함.

반면,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기본사회가 달성해야 할 가치를 ‘기본생활권’의 보장으로 보면서도 돌봄과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 5가지 정책분야를 강조하고, 정책 과정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및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을 규정하여 신정훈의원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다.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제3장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	제3장 기본사회위원회 등
제12조(기본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기본사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사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2장에 따른 기본사회 기본방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사회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절차	제13조(기본사회 종합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기본사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사회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 기본생활권 실현 목표 2.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반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 3. 인공지능·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전략 4. 환경·기후·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 평가 및 점검체계 구축

신정훈의원안	최혁진 · 김우영의원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도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기본사회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0조에 따른 시·도 기본사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기본사회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조(시·도별 기본사회 종합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기본사회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기본사회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 기본사회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기본사회 기본방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기본사회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도별 기본생활권 실현 목표 2.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 3. 시·도별 인공지능·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전략 4. 시·도별 환경·기후·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 시·도별 평가 및 점검체계 구축
제15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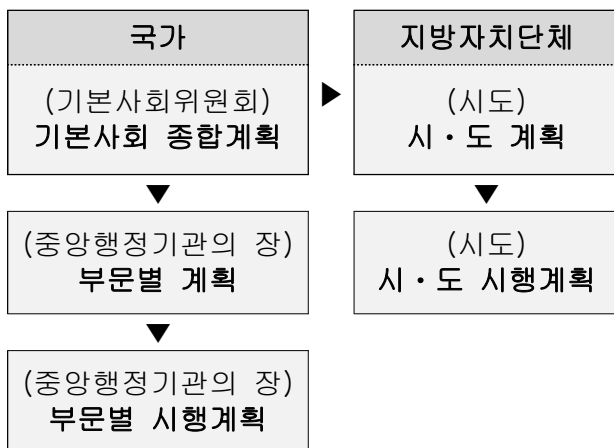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종합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신정훈의원안은 ‘기본사회 종합계획(5년 단위) → 부문별 계획(5년 단위), 시·도 계획(5년 단위) → 부문별 시행계획(매년), 시·도 시행계획(매년)’의 5가지 종류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기본사회 종합계획(5년 단위)’과 ‘시·도 계획(5년 단위)’의 2가지 종류의 계획을 별도의 연계 없이 수립하도록 함.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이때 기본사회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간에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신정훈의원안과 같이 각종 계획 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다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과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계획의 종류와 내용 등이 중복될 소지를 줄이고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관련 시책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기본사회 종합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사회 기본방향이나 추진 목표, 추진과제의 내용과 사회보장 기본계획 상 사회보장 기본방향,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의 내용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최혁진·김우영의원안은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인공지능·디지털 포용사회에 관한 사항과 환경·기후·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디지털 접근성 보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추진전략, 경제·사회·환경 정책 등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하여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이하 생략)

라. 기본사회위원회 등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제4장 기본사회위원회 등	
제16조(기본사회위원회) ①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사회 실현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장의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사회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1조(기본사회위원회) ①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장기 정책 과제 2.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조정 3.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정책의 통합 추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	제12조(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① 국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행복과 기본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포용, AI 교육,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③ 인공지능위원회는 매년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자 2. 위촉위원: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도 기본사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기본사회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도 기본사회위원회, 시·도 기본사회지원단 및 시·군·구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본사회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사회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심의·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사회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사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전년도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기본사회 기본방향에 관한 정책의 추진 현황, 성과 및 향후 계획 2. 제3장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관리 3. 그 밖에 기본사회에 관한 중요 사항	

제정안들은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기본사회 종합계획, 정책 간 통합·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⁰⁾

10)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¹¹⁾

이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기존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사회 실현 정책에 관한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임.

다만, 기본사회 정책은 사회보장의 성격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¹²⁾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이하 생략)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하 생략)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디지털 포용 등과 관하여는 최근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¹³⁾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⁴⁾

13)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이하 생략)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의2. (생략)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이하 생략)

14)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별도의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제기된 바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음.

- 제22대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회의록
- 제22대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회의록

특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들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와의 통합이나 분과위원회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¹⁵⁾

또한 동법은 자문위원회 설치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본사회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⁶⁾

참고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당연직위원을 20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촉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위원수를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3명 이내’로 수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문위원회 등 설치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 및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연직위원에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의 수와 전체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마. 보칙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5조(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①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수립·분석 및 관리,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수집·분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본사회 정책 평가 및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 등에 따라 새로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및 협력) ① 국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정책 연구 및 혁신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극 실험·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제27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기본사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들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통계 분석과 정책 평가, 시범사업 실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정훈의원안은 **국회에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4장 기본사회위원회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보고는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국회의 통제·평가 등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연차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¹⁷⁾

1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2024, p.720.

바. 부칙

신정훈의원안	최혁진·김우영의원안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위촉, 사무기구의 설치행위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위촉, 사무기구의 설치행위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

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 시행 전에도 기본사회위원회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50